

# 「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」 일부 개정안

## 1. 개정이유

지속적인 미세먼지 발현으로 인하여 공사이행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공사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, 건설 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정경비와 추락방지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(가설)시설물 설치비용이 공사비에 반영되도록 하여 시민과 건설근로자의 건강상 위해 및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함

## 2. 주요내용

-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공기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불가항력 사유에 ‘미세먼지 발현’을 추가(안 제17조제1항)

\* 계약금액은 ‘불가항력 사유’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조정이 가능하도록 기 개정(‘18.8.9)

- 산업안전·보건 등에 관한 법정경비\* 반영근거 명시(안 제14조제1항)

\* 안전관리비(건설기술진흥법), 산업안전보건관리비·산업재해보상보험료(산업안전보건법)

- 설계변경이 가능한 사유에 ‘안전사고 우려’를 포함하고, 이에 따라 추가 설치하는 시설물에 ‘가설구조물’ 포함(안 제21조제1항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건설산업기본법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-220호

##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일부개정안

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1항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태풍·홍수·폭염·한파·악천후·미세먼지 발현·전쟁·사변·지진·전염병·폭동 등 불가항력의 사태(이하 “불가항력”이라고 한다.)

제14조제1항중 “안전관리비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상당액”을 “「건설기술 진흥법」에 따른 안전관리비와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법정 경비의 상당액”으로 한다.

제21조제1항중 “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시설물의 설치”를 “안전사고의 우려,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시설물(가설구조물을 포함)의 설치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b>제14조(안전관리 및 재해보상)</b></p> <p>① "수급인"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및 보험의 가입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, 이를 위해 "도급인"은 계약금액에 <u>안전관리비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료</u> 상당액을 계상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<b>제17조(공사기간의 연장)</b> ① "수급인"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계약이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등 "수급인"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 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서면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"도급인"에게 요구할 수 있다.</p> <p>1. "도급인"의 책임있는 사유</p> <p>2. 태풍·홍수·폭염·한파·악천후·전쟁·사변·지진·전염병·폭동 등 불가항력의 사태(이하 "불가항력"이라고 한다.)</p>	<p><b>제14조(안전관리 및 재해보상)</b></p> <p>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 「<u>건설기술진흥법</u>」에 따른 <u>안전관리비와 「산업안전보건법</u>」에 따른 <u>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</u>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법정경비의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<b>제17조(공사기간의 연장)</b> ① 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태풍·홍수·폭염·한파·악천후·미세먼지 발현·전쟁·사변·지진·전염병·폭동 등 불가항력의 사태</u> (이하 "불가항력"이라고 한다.)</p>

3. 원자재 수급불균형

4. 근로시간단축 등 법령의 제·개정

② ~ ④ (생략)

**제21조(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 금액의 조정)** ①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, 누락, 오류가 있을 때 또는 시공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 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한 때에는 “도급인”은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3. (현행과 같음)

4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**제21조(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 금액의 조정)** ①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안전사고의 우려,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시설물(가설구조물 포함)의 -----  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